

고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(의안번호 제2958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5. 6. 27.

우정욱 의원 등 6인

나. 회 부 일 자 : 2025. 7. 4.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25. 7. 16.

의회운영위원회 상정 ·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설명자: 우정욱 의원)

가. 개정이유

- 고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의 효율적인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사무과장 및 기획행정전문위원 · 의회운영전문위원의 직렬을 조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고성군의회 사무과장 직렬 조정 (안 제2조)
 - 당초 지방행정사무관 ⇒ 지방행정사무관 · 지방농업사무관 · 지방시설사무관
- 고성군의회 기획행정 · 의회운영전문위원 직렬 조정 (안 별표)
 - 당초 지방행정사무관 ⇒ 지방행정사무관 · 지방사회복지사무관
 - 당초 지방행정주사 ⇒ 지방행정주사 · 지방농업(시설)주사

다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지방자치법」 제103조(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)
 - 「고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」 제1조
-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
- 입법예고: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5-30호
 - 예고기간: 2025. 6. 27.(금) ~ 7. 3. [6일간]
 - 의견반영 등 조치 내용: 의견 없음

3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: 조래훈)

- 본 개정규칙안은 고성군의회 사무기구의 효율적인 운영과 다양한 직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사무과장 및 전문위원의 직렬 기준을 확대·조정하여 인사운영의 탄력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.
- 개정 타당성
 - 지방의회 사무기구는 전문성, 효율성, 다양성을 고려하여 인사운영의 유연성이 요구됨.
 - 현행 규칙의 직렬 제한은 다양한 직무수요 및 인력 운용의 효율성에 한계가 있어, 직렬을 확대하는 것은 타당함.
 - 특히 전문위원 역할은 다양한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직렬 다변화가 바람직함.
- 종합검토 의견
 - 본 개정규칙안은 고성군의회 사무기구의 인사운영 유연성 제고와 전문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적절하며,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와의 저촉 여부나 규칙 개정 체계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5. 토 론: 없음

6. 심사결과: 2025. 7. 16.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